

# 「PL法(製造物責任法)과 파렛트」

## 파렛트 업계, PL法(製造物責任法)시행에 대비해야



(사)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은규

### 1. PL法の 개념

우리 나라에서도 마침내 製造物責任法(Product Liability 약칭 PL法)이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PL制度란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해당상품으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의 안전을 손해 당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여 제조업자의 안전확보노력을 촉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를 法的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PL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현행법상 보상을 받기 위 하여는 제작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PL法上の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거증 책임이 없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 2. 세계 각국의 PL法 시행현황

전세계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은 모두 시행중이고 개도국 가운데서도 중국,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6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80년대 말부터는 연간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2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송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에서 배심원들이 피해자에게 동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재판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소송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5년간의 논란 끝에 95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송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륙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은 변호사 접근이 쉽지 않고 사전화해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악용사례가 극히 적었다고 한다.

### 3. 우리나라와 PL法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9년에 PL法(제조물책임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려다가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을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으로 한정하였으며 또 10년 안에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업계는 불만이다. 앞으로 제품을 만들 때 안전에 대해 크게 고민해야하고 이는 결국 제품가격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업계가 보험가입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더라도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0.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한 점에서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에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문호개방에 따라 외국의 저질상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제어수단이 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4. 파렛트 업계와 PL法

만약 파렛트를 사용하는 유통회사의 상품 매장에서 고객이 파렛트가 훼손되어 상품이 무너져 신체상해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신체상해를 당한 고객은 1차적으로 유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상할수 있는데 이때 유통회사는 원인제공을 한 파렛트의 파손이 사용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작 잘못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에서 온 것인지를 판단하여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품 결함에 원인이 있다면 제 2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의 쟁점에서 파렛트의 품질과 올바른 사용 방법의 고지가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파렛트의 제작회사가 명시되어있지 않을 때에 다툼의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파렛트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있으며 이때 소송의 1차대상자(피고)는 파렛트 사용회사이며 2차 대상자(피고)는 파렛트 제작회사가 되고 있다.

### 5. 파렛트 업계의 대비책

파렛트 사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까

미국의 경우 미국파렛트협회의 PDS(파렛트 디자인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 방법은 파렛트 사용청구서, 선하증권, 견적서 등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인쇄를 하거나 그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을 권장하고있다.

“모든 파렛트 사용의 위험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용자나 책임있는 당사자의 것임. 어느 누구도 파렛트에 올라서거나 기대서는 안되며 파렛트를 지지대로 사용하지 말 것. 파렛트 사용자는 하나 하나의 파렛트가 손상되었는지를 검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 파렛트가 사용되어도 적절한지를 결정하여야함.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서명하고 당신회사의 재산을 보호하

는 주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음.”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는 이러한 PL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7월 22일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목재, 프라스틱 파렛트)을 제정하여 소책자로 인쇄 보급하고 있다.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에 자사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고객(파렛트 사용회사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소중한 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자 서비스이며 의무이고 자신(파렛트 제작회사)에게도 PL法에 의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파렛트제작회사는 파렛트에 자사 제작품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마크, 제작회사명 페인팅) 지금과 같은 출혈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KS규격(시험강도 등)을 잘 지켜 품질의 향상을 꾀하여야하고 파렛트 구매 회사도 저가 구매에만 집착하지 말고 파렛트의 수명 PL法 등을 고려하여 품질위주의 구매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파렛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생산, 물류 부문의 관계자에 대하여 “파렛트의 올바른사용법”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급함으로써 파렛트 제작 메이커는 자사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PL法에 의한 파렛트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인지, 제작자의 책임인지를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더 큰 의미는 파렛트 제작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